



KIFFA 복합운송 선하증권 표준약관(1997) **Standard Conditions (1997) governing KIFFA Multimodal Transport**

1) 표면약관

2) 이면약관

I. 일반조항

- I -1. 정의
- I -2. 선하증권의 적용과 발행
- I -3. 양동성 및 물품에 대한 권리
- I -4. 운송의 방법 및 경로

II. 운송인

- II -1. 운송인의 역할
- II -2. 적부의 자유 및 갑판적 화물
- II -3. 운송인의 책임
- II -4. 운송인의 책임 한도
- II -5. 운송인 사용인과 기타인의 책임
- II -6. 불법행위에 대한 본 약관의 적용
- II -7. 물품의 인도
- II -8. 유치권

III. 화주

- III -1. 위험물과 배상
- III -2. 화주의 책임
- III -3. 운임 및 요금
- III -4. 공동해손
- III -5. 물품의 멸실 및 훼손의 통지

IV. 부가조항

- IV -1. 지상약관
- IV -2. 제소기간
- IV -3. 부분적인 무효
- IV -4. 관할권 및 준거법



1) 표면약관

본 복합운송선하증권(이하 "본 운송증권"이라 칭함) 을 수령함에 있어 화주는 어떠한 지역적 특권 및 관습 또는 당사자 사이의 다른 약정에도 불구하고 본 운송증권의 표면 및 이면에 언급한 모든 규정 및 조항에 구속되는 것에 합의하며, 본 운송증권에 달리 기재되지 않는 한 운송인은 본 운송증권에서 합의되고, 위임되고, 인가된 장소로 운송하기 위하여 본 운송증권에 열거된 물품을 외관상 양호한 상태로 화주로부터 인수한 것으로 한다.

본 선하증권에 기재된 물품의 명세는 화주가 기재한 것이며 물품의 중량, 용적, 수량, 상태, 내용물 및 그 가액에 대해 운송인은 알지 못한다.

상기 증거로서, 본 운송증권에 달리 기재되지 않는 한 원본 3통의 운송증권이 서명된다.

수통의 원본 선하증권이 발행되어 그 중 1통의 원본이 회수되면 다른 증권은 무효가 된다.

운송인이 요구하는 경우 화주는 물품 또는 물품인도지시서(D/O)와 상환으로 정히 배서된 운송증권 원본 1통을 제출하여야 한다.

2) 이면약관

I. 일반조항

I-1. 정의

- 1) "운송인"이라 함은 본 복합운송선하증권(이하 "본 선하증권"이라 함)의 표면에 운송인으로 표기된 자로서 화주와 복합운송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이행의 책임을 지는 사람을 말한다.
- 2) "실제운송인"이란 운송인으로부터 물품운송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위탁받은 사람 또는 실제운송인으로부터 이행위탁을 받은 다른 사람을 포함한다.
- 3) "화주"라 함은 본 운송증권의 실제 또는 전(前) 소지인을 의미하며, 그리고 송하인, 수하인, 물품의 소유자와 수령인 및 그들의 대리인을 포함한다.
- 4) "복합운송계약"이란 최소한 두가지 이상의 다른 운송수단에 의하여 물품을 운송하기 위한 단일운송계약을 의미한다.
- 5) "물품"은 생동물을 포함하여 운송인이 제공하지 않은 컨테이너, 팔레트 또는 이와 유사한 운송이나 포장에 위한 용구를 포함한 모든 재물(財物)을 의미하며, 그와 같은 물품이 갑판상단 또는 하단에 적재되어 운송될 예정인가 또는 운송 되는지는 상관 없다.
- 6) "인수"라 함은 운송을 위하여 본 운송증권상에 기재된 장소에서 운송인에게 물품이 인도되고 또한 운송인이 이를 수취하였다는 것을 말한다.



- 7) "특별인출권(SDR)"은 국제통화기금에서 정의하는 계산단위를 의미한다.
- 8) "Hague Rules"라 함은 1924년 8월25일 브뤼셀에서 조인된 선하증권에 관한 몇가지 규칙의 통일을 위한 국제협약의 규정을 의미한다.
- 9) "Hague-Visby Rules"라 함은 1968년 2월23일 브뤼셀에서 조인된 의정서에 의해 개정된 Hague Rules를 의미한다.
- 10) "COGSA"라 함은 1936년 4월16일에 승인된 미 합중국 해상화물운송법을 의미한다.

I -2. 선하증권의 적용과 발행

- 1) "복합운송선하증권"이라는 표제에도 불구하고 본 운송증권의 약관에서 정하고 언급한 규정은 단일운송수단에 의한 운송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 2) 운송인은 본 운송증권을 발행함으로써 물품을 수취한 장소로부터 본 운송증권의 표면에 지정된 인도장소까지의 운송을 이행하거나 자기의 명의로 그 이행의 주선을 보증 한다.
- 3) 본 운송증권의 발행은 **한국복합운송주선업협회(KIFFA)** 회원인 자에 한한다.

I -3. 양도성 및 물품에 대한 권리

- 1) 본 운송증권을 수령함으로써 화주 및 그 양수인은 본 운송증권의 표면에 "양도금지" 라고 기재되어 있지 않는 한 본 운송증권이 물품의 권리를 표창하는 것이며, 본 운송증권의 소지인은 본 운송증권의 배서에 의하여 운송증권에 기재된 물품을 수령 또는 양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 2) 본 운송증권은 그 표면에 "양도금지"라고 기재되어 있지 않는 한 양도가능하다.
본 운송증권이 양도가능할 경우 지시식일 경우에는 배서에 의하여, 소지인출급식일 경우에는 배서없이 양도 가능하다.
- 3) 본 운송증권은 운송인이 증권 표면에 기재된 물품을 인수하였다는 추정적 증거가 된다.
그러나 본 운송증권이 상당한 대가로 선의의 수하인에게 양도 혹은 이전되어졌 을 때에는 이것에 대항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한다.

I -4. 운송의 방법 및 경로

- 1) 운송인은 화주에게 통지하지 않고 언제든지
 - ㉠ 어떠한 운송방법 혹은 보관방법을 사용할 수 있으며,
 - ㉡ 다른 운송수단으로의 대체 혹은 표면에 기재한 이외의 선박에 의한 운송을 포함해서 하나의 운송수단에서 다른 운송수단에 옮겨서 물품을 운송하는 것 또는, 하나의 운송수단에서 다른 운송수단에 옮겨서 물품을 운송하는 것 또는,



- ㉟ 컨테이너에 적입된 물품을 끄집어 내어 다른 컨테이너 혹은 그외의 다른 방법에 의해 전송하는 것 또는,
 - ㊸ 물품을 어떠한 지점 혹은 항구(표면에 선적항, 하역항으로 기재됨과 관계없이) 에서 선적 혹은 하역 하든지, 혹은 물품을 어떤 지점 혹은 항구에서 보관하는 것 또는
 - ㊹ 어떠한 정부 혹은 정부의 대리인으로서 행위하며 혹은 행위한다고 칭하고 있는 사람 혹은 단체 및 운송인이 사용하는 운송수단에 들어있는 보험조항에 의한 명령 혹은 지시를 하는 권한을 가진 자 혹은 단체에 의해 내려진 명령 및 권고에 따를 수 있다.
- 2) 전 항에 규정되어진 자우에 대해서는 물품의 운송에 관계됨이 없이, 운송인은 어떠한 목적을 위해서도 원용할 수 있다.
- 3) 제 I -4조 1항에 의거하여 취해진 행위 혹은 그것에 의해 발생한 지연은 계약상의 운송의 범위 내로 보며 어떠한 경우에도 이로(離路)가 아니다.

II. 운송인

II- 1. 운송인의 역할

운송인은 복합운송계약에 따라 복합운송 서비스를 성실히 제공하여야 한다.

II- 2. 적부의 자유 및 갑판적화물

- 1) 운송인은 물품을 컨테이너에 적입하고 또한 다른 화주의 물품과 함께 운송할 수 있다.
- 2) 운송인은 물품이 컨테이너 내부 속의 포장여부에 관계없이 갑판 상단 또는 하단 적재 운송 할 권리를 가진다.
- 3) 물품이 갑판상단에 적재되었을 경우 운송인은 "갑판상단적재" 상태를 증권 표면에 마크하거나 스탬프하는 등의 특별한 표기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II -3. 운송인의 책임

- 1) 본 증권 약관 하에서는 물품에 관한 운송인의 책임 기간은 운송인이 물품을 인수한 시점에서 이를 인도하는 시점까지이다.
- 2) 본 운송증권의 약관에 의거 운송인은 고용계약 범위 내에서 활동하는 자신의 사용인 또는 대리인의 작위 및 부작위, 또는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사용하는 기타 사람들의 작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운송인 자신의 작위 또는 부 작위인 것과 마찬가지로 책임을 진다.
- 3) 만일 운송인은 물품의 멸실이나 훼손뿐만 아니라 인도 지연에 대하여 운송인 자기자신, 사용인, 대리인 또는 제II-3조 제2항에서 언급된 사람의 과실 또는 부주의로 인해 물품의 멸실, 훼손 또는 인도 지연이 발생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않는 한 운송 인은 인도 지연 뿐만 아니라 멸실 또는 훼손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 그러나 송하인이 적시 인도에 관심을 표시하고 이를 운송인이 수용하여 본 운송증권에 명기하지 않는 한 운송인은 지연으로 인해 발생 된 손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4) 물품이 명시적으로 합의된 시일내에 인도되지 아니하거나 또는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관련 상황을 고려하여 성실한 운송인에게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시일 내 에 물품이 인도되지 않을 때 인도지연에 해당한다.
- 5) 만일 물품이 제II-3조 제4항에서 정하여진 인도일로부터 90일내에 인도되지 않을 경우 손해 배상청구 자는 반증이 없는 한 그와 같은 물품이 멸실 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 6) 운송인은 멸실, 훼손 또는 인도지연이 다음의 사유에 의해서 발생한 것일 때에는 그 책임을 면할 수 있다.
- ㉠ 화주의 고의 또는 과실, 태만
 - ㉡ 지시권자의 지시에 따랐을 때,
 - ㉢ 물품 고유의 하자 또는 성질,
 - ㉣ 포장의 불완전 또는 기호 또는 번호의 불충분,
 - ㉤ 화주에 의한 컨테이너의 취급, 적재, 적부 또는 양하,
 - ㉥ 전쟁, 전쟁과 유사한 작전, 소란, 폭동 및 이유를 불문하는 부분적 또는 전 면적 스트라이크, 공장폐쇄, 노동중지 또는 제한,
 - ㉦ 운송인 자신이 피할 수 없는 원인 또는 사건으로서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도 그 발생을 막을 수 없는 결과.
- 7) 상기 제II-3조 제3항에도 불구하고 운송인은 해상 또는 내수로를 이용하여 운송된 물품에 관하여는 그 멸실, 훼손 또는 인도지연이 그러한 운송중에 다음의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물품의 멸실, 훼손 또는 인도지연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 ㉠ 선장, 선원, 도선사 또는 운송인의 사용인에 의한 항해 또는 선박의 관리에 관한 행위,



태만 또는 부주의

- ⑥ 실제운송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닌 화재
 - ⑦ 선박의 감항능력 결여로 발생한 경우 운송인은 항해 개시 시에 선박의 감항능력을 갖추기 위해 상당한 주의를 다하였음을 입증한 경우에 한한다.
- 8) 본 선하증권상에 상치되는 내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화주의 계량, 적재 및 갯수”, “화주가 적입 한 컨테이너” 또는 이와 유사한 표현이 본 선하증권 표면에 기재 된 경우 복합운송계약을 수행하는 운송인 또는 본 계약의 이행을 위한 운송인의 사용인의 과실, 실수, 태만에 의해 발생되지 않은 컨테이너 내부 물품의 분실이나 훼손에 대해 운송인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

II-4. 운송인의 책임한도

- 1) 물품의 멸실이나 훼손에 대한 보상금액은 물품이 수하인에게 인도된 장소와 시기 또는 운송계약에 따라 물품이 인도되어야 할 장소와 시기의 가격을 참조하여 산정한다.
- 2) 물품의 가액은 해당 물품의 현 거래가격에 따라 결정되거나 또는 그와 같은 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현 시장가격에 따르거나 동종, 동질의 물품에 대한 정상가격을 참조하여 결정한다.
- 3) 운송인은 어떠한 경우에도 물품의 멸실, 오인인도, 오송 또는 훼손에 대하여 또는 달리 물품과 관련하여 매 포장당 666.67SDR 또는 매 Kg당 2SDR을 초과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그러나 운송인이 물품을 인수하기 전에 화주가 물품의 특성과 가액을 밝히고 운송인이 이를 인정하고 증가운임이 지불되어 그 가액이 운송인에 의해 본 선하증권에 기재된 경우에는 그 가액을 보상 한도액으로 본다.
- 4) 위에서 언급된 조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에 따라 복합운송에 해상 또는 내수로에 의한 물품 운송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경우 운송인의 책임은 물품의 매 Kg당 8.33SDR을 본 조의



적용을 위한 보상한도액으로 본다.

- 5) 물품의 멸실, 오인인도, 오송, 훼손, 기타 운송인의 책임의 원인이 되는 상황이 복합운송 중의 어느 특정구간에서 발생한 경우 그 운송구간에 관하여 강행 적용되는 국제협약이나 국내법에서 그 구간에 대하여만 별도로 운송계약을 체결한 것에 적용할 수 있는 다른 책임의 한도를 규정하고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운송인의 책임한도는 상기 국제협약 또는 국내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다.
- 6) 운송인이 물품을 인도하기 전에 화주가 물품의 성질과 가액을 신고하지 않고 본 증권에 기재하지 아니하였으며, 또한 증가운임이 지불되지 아니하는 한, 미국해상물품운송법 (COGSA)이 적용되는 경우 그 법에 의한 운송인의 책임은 매 포장당 또는 포장 이외의 방법으로 선적된 경우 매 운임 단위당 미화 500달러(\$)를 초과할 수 없다.
- 7) 운송인이 물품의 인도지연이나 그 인도지연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물품의 멸실 또는 훼손에 대해 책임을 질 경우 운송인의 책임은 본 선하증권에 의거한 복합운송계약운임을 초과할 수 없다.
- 8) 운송인의 책임의 총액은 물품의 전손에 대한 책임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 9) 화주와 운송인은 본 선하증권상의 운송인의 면책 또는 책임제한은 본 선하증권에 적용되는 국제협약 또는 입법의 것에 추가적인 것이라는 점과 본 선하증권상의 어떤 조건도 그러한 면책 또는 책임제한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 특별히 합의한다. 운송인은 본 선하증권의 조건 또는 국제협약 또는 준거법 중 보다 유리한 것에 의하여 자신의 책임을 면제 또는 제한할 수 있으며, 그 책임이 본 선하증권의 조건의 위반, 불법행위, 기타 어떠한 원인에 의한 것이든 불문한다.

II-5. 운송인의 사용인과 기타인의 책임

- 1) 본 선하증권의 약관은 본 선하증권의 이행에 관한 손해배상청구가 운송인이 계약을 이행



하기 위하여 그 업무를 이용한 사용자, 대리인 또는 기타인(독립된 계약자 포함)을 상대로 제기되는 경우 그것이 계약을 근거로 한 것인지 또는 불법행위에 근거한 것인지 여부에 상관 없이 적용된다. 그리고 운송인과 그 사용자, 대리인 또는 기타인의 총 책임은 상기 제II-4조의 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 2) 본 선하증권에 의해 증명된 본 계약체결시 운송인은 본 규정 적용범위내에서 자기자신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대리인 또는 그와 같은 사람을 위한 수탁인 으로서 활동한다. 그리고 그와 같은 사람은 본 규정 범위 내에서 본 계약의 당사자가 되거나 당사자로 간주한다.
- 3) 운송인 및 사용자, 대리인 혹은 그 외의 사람으로부터 배상을 받을 수 있는 총액은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도 이 약관에 규정되어진 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II-6. 불법행위에 대한 본 약관의 적용

본 선하증권약관은 운송인의 복합운송계약의 이행에 관하여 운송인을 상대로 하는 모든 청구에 대하여 그것이 계약내용을 근거로 하는 것인가 또는 불법행위를 근거로 하는 것인가에 상관없이 적용된다.

II-7. 물품의 인도

- 1) 물품의 도착통지 받을 당사자를 본 선하증권에 기재하는 것은 단지 운송인의 정보용일 뿐이며 그러한 통지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운송인은 어떠한 책임에도 연루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본 선하증권하 예서의 화주의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 2) 운송인은 언제라도 물품을 인도지의 지리적 범위내의 운송인이 정한 임의의 장소에서 임의 인도가 가능하다.
- 3) 어떠한 경우에도 운송인의 책임은 운송인이 지정한 장소에서의 법에 따라 화주, 그 대리인 또는 하수계약자, 다른 사람 등에게 인도될 때 종료된다. 세관 또는 기타 당국의 관리에



물품을 인도함으로써 운송인의 책임이 종료된 것으로 간주한다.

- 4) 운송인이 컨테이너 상태로 물품을 수취하였을 경우 운송인은 본 증권의 표면에 기재된 컨테이너 총 개수의 인도에만 책임이 있으며, 컨테이너를 개봉할 책임은 없다.
- 5) 운송인이 물품을 컨테이너에 적입한 경우 운송인은 컨테이너를 개봉하여 컨테이너 내부의 내용물(물품)을 인도하며, 운송인은 물품을 컨테이너에 적입한 채로 인도할 의무가 없다.
- 6) 운송인은 물품이나 포장에 분명하고, 알아 볼 수 있게 또한 견고하게 표식이 되어 있지 않을 경우 표식(marks)에 따라 인도하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이 없다.
- 7) 도착지에서든 또는 다른 곳에서든 운송인은 본 선하증권 또는 2통 이상의 원본이 발행

되었을 경우 그 중 1통의 원본이 제시되지 않는 경우에는 물품의 인도를 거절할 수 있다.

운송인은 본 선하증권 또는 2통 이상의 원본이 발행되었을 경우 그 중 1통의 원본을 소지한 자에게 물품을 인도한 경우에는 나머지 원본을 소지하거나 또는 달리 물품에 대한 권리를 가지는 자에 대한 인도의 책임은 없다.

- 8) 상기 제II-7조 제7항에도 불구하고 본 선하증권의 표면에 "양도금지"의 기재가 있는 경우, 운송인은 본 선하증권상의 수하인으로 기재된 자가 본 선하증권을 제시하지 않더라도 그에게 물품을 인도함으로써 물품의 인도 의무를 다한 것으로 한다.

II-8. 유 치 권

- 1) 운송인은 본 운송계약 혹은 그 외의 계약에 의거하여 누구 부담이든 관계없이 운송인에게 지불되어야 할 제금액, 공동해손분담금 및 그 회수비용을 위해 물품 및 물품에 관한 서류에 대해서 유치권을 가지며, 또한 이 때문에 화주에게 통지하지 않고 물품 및 서류를 화주의 비용 및 화주에 대해서 어떤 책임도 지지 않고 공적인 경매 또한 사적 매매에 의해 매각 할 권리를 가진다.
- 2) 물품이 상당 기간내에 인수되어지지 않을 경우 혹은 운송인의 판단에 의해 물품이 부패 혹은 무가치로 될 위험이 있을 때는 운송인은 유치권과 관계없이 자기 재량으로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고 전적으로 화주의 위험과 비용부담에 의해 물품을 매각, 그 외의 방법에 의해 처분할 수 있다.
- 3) 만일 그 물품의 경매 또는 매매의 대금이 채권액 및 발생비용에 미치지 못할 경우 운송인은 화주로부터 그 부족액을 회수할 수 있다.



Ⅲ. 화 주

Ⅲ-1. 위험물과 배상

- 1) 화주는 위험물에 대하여는 관련법규 혹은 규정에 따라 위험이 있다는 취지의 뜻을 표시
화주가 이 통지를 소홀히 하고 운송인이 물품의 위험성과 특성에 관하여 달리 인식하지
못한 경우에는,
 - ㉠ 화주는 그러한 물품의 선적으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손실, 손상 또는 비용, 인적사상
(人的死傷)에 대하여 운송인에게 책임을 지며, 또
 - ㉡ 운송인은 화주에게 그 물품에 대해 배상하지 않고 언제라도 사정에 따라 이를 양하
하거나 파괴하거나 또는 무해화할 수 있다.
- 3) 만일 운송인이 위험성을 알고 있는 어떠한 물품이 선적되어 선박이나 다른 물품에 위험을
미치게 될 경우 운송인은 적절한 방법으로 그 물품을 운송인의 책임 없이 장소여하를 불문
하고 양하, 양륙, 파괴 또는 무해처리할 수 있으며, 다만 공동해손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Ⅲ-2. 화주의 책임

- 1) 화주는 운송인이 물품을 인수할 때에 화주가 직접 또는 그 대리인이 본 선하증권에
기재하기 위하여 제공한 물품의 일반적인 성질, 화물표식, 개수, 중량, 용적 및 수량과
경우에 따라서는 물품의 위험성에 관한 제반 명세의 정확성을 운송인에게 보장한 것으로
간주하여야 한다.
- 2) 화주는 상기와 같은 물품의 명세와 관련하여 그것이 부정확하거나 또는 불완전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손실에 대해서 운송인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 3) 화주는 본 선하증권을 양도한 후에도 그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 4) 운송인의 이와 같은 배상청구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송하인 외의 제3자에게 본 복합운송
계약의 책임과 의무를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



Ⅲ-3. 운임 및 요금

- 1) 본 선하증권의 표면에 기재되어진 인도지까지의 운임은 해당운임이 선불 또는 도착지에서 후불에 관계없이 손해배상청구, 반소 또는 상계로 인한 할인이나 연기함이 없이 현금으로 지급되어야 한다. 운송인이 물품을 인수하는 순간 운임을 획득한 것으로 간주되며, 어떠한 경우에도 반환될 수 없다.
- 2) 어떤 이유에서든 본 선하증권이나 준거법에 의하여 운송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운임, 체선료, 체당금, 공동해손분담금, 해난구조료, 기타 유사한 성질의 비용을 도착지 또는 기타 장소에서 지급하거나 또는 수하인으로부터 수취하여야 할 경우에도 송하인은 그 지급 의무에서 면제되지 아니한다.
- 3) 본 선하증권상의 운임과 기타 제 금액은 본 선하증권에서 지정하고 있는 통화로 지불되거나 또는 운송인의 선택에 따라 발송지 또는 목적지 국가의 통화로 지급되며, 이때의 환율은 발송일에 선불된 화물에 대해서는 가장 높은 은행의 현행 일람출급 환율이 적용되며, 목적지에서 지불되는 운임에 대해서는 화주가 물품의 도착통지를 받은날 또는 인도지시서의 회수일 양일중 최고의 은행 현행 일람출급 환율을 적용하거나 또는 운송인의 선택에 따라 본 운송증권 발행일의 환율을 적용한다.
- 4) 화주는 물품과 관련된 모든 부과금, 세금, 요금 또는 기타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만일 운송인이 장비를 제공할 경우 화주는 운송인의 과실 또는 부주의에 기인하지 않는 한 장비와 관련된 모든 유지료와 요금을 지불해야 한다.
- 5) 화주는 전쟁, 비상사태, 전염병, 파업, 정부통제 또는 불가항력으로 인한 이로 또는 지연에 따른 일체의 경비 또는 기타의 비용에 대해서 운송인에게 운임에 비례하여 보상하여야 한다.
- 6) 화주는 물품의 내용, 보험, 중량, 용적 또는 가액의 신고가 정확함을 보장하지만 운송인은 내용물의 검사와 중량, 용적 또는 가액을 확인할 수 있다. 만일 당해 검사중 상기 신고내용



이 부정확하다는 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본 운송증권에 기재된 운임에 관계없이 부과된 운임과 정확한 운임과의 차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 또는 정확한 운임의 2배에서 부과된 운임을 차감한 금액 중 적은 쪽을 택하여 검사비와 다른 물품에 대해 운임손실의 배상금으로 화주가 운송인에게 지불해야 한다.

- 7) 본 선하증권에 의한 운송과 관련하여 운송인이 타인으로부터 운임, 요금 또는 기타비용의 징수 지시를 수락하더라도 화주는 청구서를 접수하는 즉시 지급하여야 하고 어떠한 이유에서든 지불되지 않은 상기 금액에 대해서는 여전히 책임을 져야 한다.

Ⅲ-4. 공동해손

- 1) 공동해손은 운송선인이 선택하는 항구 또는 장소에서 1990년 수정된 York- Antwerp Rules, 1974에 따라 정산한다.
- 2) 제Ⅲ-4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화주는 운송인에게 부과된 공동해손에 관한 청구와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 운송인을 보호하고, 운송인에게 배상을 하여 해(害)가 되지 않도록 하고 운송인이 이와 관련하여 보증을 요구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 3) 운송인은 화주가 지불해야 할 공동해손 분담금에 대해 보증서를 징수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를 지지 않는다.

Ⅲ-5. 물품의 멸실 및 훼손의 통지

- 1) 만일 수하인이 물품의 인도를 받을 때에 수하인이 운송인에게 물품의 멸실이나 훼손에 대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는 한 그 물품의 인도는 운송인이 본 선하증권에 기재 된대로 물품을 인도했다는 사실에 대한 추정적 증거가 된다.
- 2) 만일 멸실이나 훼손이 외견상 명백하지 않고 물품이 수하인에게 인도된 일자로부터 연속 3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을 경우 동일한 추정증거의 효과가 적용된다.



IV. 부 가 조 항

IV-1. 지 상 약 관

- 1) 본 약관은 선하약관에 적용되는 국제협약이나 국내법의 강행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효력을 가진다.
- 2) 본 선하증권상의 물품이 선박의 선적부터 하역까지 해상과 내수로운송을 대상으로 하는 한, 본 선하증권은 입법에 의하여 적용이 강제되는 **헤이그규칙 (Hague Rule)** 또는 **헤이그-비스비(Hague-Visby Rules)** 규칙이 적용되며, 그와 같은 규정은 갑판 상단 또는 하단적재 운송에 관계없이 모든 물품에 적용된다.
- 3) 미국 해상물품운송법은 본 선하증권에 강제 적용되는 한도내에서 갑판 상. 하단에 적재됨에 관계없이 해상에 의한 물품운송에 적용된다.

IV-2. 제 소 기 간

운송인은 물품인도 후 또는 물품이 인도되어야 하는 일자나 제II-3조 5항에 의거 물품이 인도되지 않아 수하인이 그 물품이 멸실 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되거나 기타 청구의 원인이 되는 사건의 발생 중 최초로 도래하는 것으로부터 9개월 이내에 소송이 제기되지 않으면 본 약관에 의거 모든 책임으로부터 면제된다.

IV-3. 부분적인 무효

- 1) 본 선하증권의 조건은 다수일 수 있다. 어느 한 부분 또는 어느 한 조건이 타당하지 않거나 효력이 없다고 해서 다른 부분, 다른 조건이 그에 대해 영향을 받지 않는다.
- 2) 특히, 본 선하증권상 어떠한 조건이 국제법령 또는 국내법이나 어떠한 요율표의 일정 부분과 상이할 때 그 부분에 대해 그 조건은 효력이 발생치 않을 뿐이고, 그 외의 조건까지 효력을 잃는 것은 아니다.



a. hartrodt
TRANSPORT IS OUR BUSINESS

IV-4. 관할권 및 준거법

운송인을 상대로 한 소송은 대한민국 내 법정에서만 제기될 수 있으며 대한민국 법에 따라 결정 된다.